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0. 3.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 1. 1 공포·시행)으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 조정 및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2009년도에 한해 적용하던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하여 국민 세부담을 완화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함(안 제23조의2)

-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 규정을 세목체계 개편에 따라 재편성
 - 주민세 균등할, 사업소세 재산할 → 주 민 세
 - 주민세 소득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세율(안 23조의3)
 - 소 득 분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나.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 폐지

- 영세 농가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과세중단 상태인 농업소득세 폐지
-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는 사업소세 폐지

다. 도시계획세율 인하 적용기한 1년 연장(부칙 제2조)

- 지방세법 개정('09. 2. 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
-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2009년도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세율인하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민 세부담을 완화 적용코자 함.

3. 참고사항

가. 조 례 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다.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라. 입법예고 : '09. 11. 17 ~ 12. 7(21일간)

'10. 2. 2 ~ 2. 23(22일간) 실시, 제출된 의견 없음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제18조제2항 중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 를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로 한다.

제18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5,000원
- 나.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3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세 조례」 제24조(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2장에 제1절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23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의1(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3조의3(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3조의4(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3조의1(주민세 신고의무)를 준용한다.

제38조 앞에 □제3절 자동차세□를 삽입한다.

제2장제5절(제49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3장제2절(제99조부터 제105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조례 제1909호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목) ① (생 략)</p> <p><u>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주민세</u> 2. <u>재산세</u> 3. <u>자동차세</u> 4. <u>주행세</u> 5. <u>농업소득세</u> 6. <u>담배소비세</u> 7. <u>도축세</u> <p>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사업소세</u>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p> <p>제18조(납세의무자)</p> <p>① (생 략)</p> <p>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u>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u>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p> <p style="margin-top: 20px;"><u><신 설></u></p>	<p>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p> <p><u>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주민세</u> 2. <u>지방소득세</u> 3. <u>재산세</u> 4. <u>자동차세</u> 5. <u>주행세</u> 6. <u>담배소비세</u> 7. <u>도축세</u> <p>③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삭 제></u>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p> <p>제18조(납세의무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u>소득세, 법인세의</u>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p> <p style="margin-top: 20px;"><u>제18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u></p>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 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5,000원
-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50,000원

2. 법인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제20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 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5,000원
- 나.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2. 법인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법인으로 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 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 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 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 액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초과 50억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 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 금액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업소득세할: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신 설>

<신 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법인으로 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 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 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법인으로 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
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
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
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
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3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세 조례」 제24조(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신 설>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신 설>

제23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의1(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

<신 설>

<신 설>

<신 설>

제38조(납세의무자)

제5절 농업소득세

제49조 ~58조(생략)

제3장 목적세

제2절 사업소득세

제99조 ~105조(생략)

부칙(2009.6.19)

제2조(적용기한) 제97조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
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3조의3(세율) ① 법 제176조의12
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
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3조의4(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
항은 제23조의1(신고의무)를 준용
한다.

제3절 자동차세

제38조(납세의무자)...

<삭 제>

제49조 ~58조 <삭 제>

제3장 목적세

<삭 제>

제99조 ~105조 <삭 제>

부칙(2009.6.19)

제2조(적용기한) -----
----- 2009년도 및 2010년도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④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세
 - 가. 주민세
 - 나. 재산세
 - 다. 자동차세
 - 라. 주행세
 - 마. 삭제 <2010.1.1>
 - 바. 담배소비세
 - 사. 도축세
 - 아. 지방소득세
2. 목적세
 - 가. 도시계획세
 - 나. 삭제 <2010.1.1>

제176조(세율) ①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 가.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 나.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0,000원
2. 법인의 표준세율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 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③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

제176조의4(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76조의4(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76조의12(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79조의7(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9(오염물질배출사업소)법 제17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해당 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 강원도세조례

제24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거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과세표준액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취득연월일과 취득의 사유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에 있어서는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
6. 건축물에 있어서는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7. 차량·기계장비에 있어서는 종류·연식·용도
8.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9.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 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0.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 연월일과 등록번호
11. 삭제<2000·3·15>
12.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과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에 있어서는 골프장·승마장 및 콘도미니엄과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 이용일수
13.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